

	예산편성위원회규정	규정번호	3-8-24
		제정일자	2004.09.01.
		개정일자	2020.09.01.
		개정차수	4차
		소관부서	전략기획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학교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
2. 대학 예산 편성 보고에 관한 사항
3. 대학 중기재정운용에관한 사항
4. 기타 예산과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당연직위원: 교무위원
2. 전문위원: 교직원 중에서 직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 1인
-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전략기획처장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-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소위원회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.

- 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부위원장, 전문위원, 간사로 하며,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추가로 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.
- ③ 부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8조(간사)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9조(경비지원) 대학교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